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29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박균택 · 허 영 · 박정현
박 정 · 김용만 · 박상혁
김주영 · 맹성규 · 권칠승
양부남 · 주철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

제24조제3항 중 “정보처리기기 설치의”를 “정보처리기기 및 보안등 설치의”로, “시설기준 등”을 “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행안전지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강력범죄 현황
3. 그 밖에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경우, 그 설치 및 밝기 기준을 3년 이내에 맞추도록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 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u> <u>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u> <u>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u> <u>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u> <u>시하는 구역</u> 5. (현행 제4호랑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 치)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u>시설기준 등</u> 필요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 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정보처리기기 및 보안등 설치</u> <u>의-----</u> <u>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u> -----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 ② (생략)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보행안전지수는 다음 각 호
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강력범죄 현황

3. 그 밖에 보행안전지수의 산
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④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